

제4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제4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사례 33 2020서울조정87 / 손해청구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만을 근거로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게시글을 인용하여, 신청인 1 회사의 팀장급 직원인 신청인 2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인 신청인 3을 성추행한데 이어 자신을 말린 부하 직원을 폭행하였음에도, 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2에게 1개월 정직에 보너스 삭감이라는 징계만을 내렸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보도내용 중 성추행 논란은 사실이 아닌데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기업 이미지와 해당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취재원의 신뢰도가 낮고 이를 검증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기사 열람·검색 차단 및 신청인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의 협의 결과,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및 신청인 2, 3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사항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의 열람을 차단하고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해당 사항을 전송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신청인 2. 및 신청인 3.에게 각각 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34 2020서울조정307·308, 2020서울조정309·310 (병합) / 각 정정·손배청구

지역 '맛집'소개 프로그램에서 식사하는 신청인의 초상을 방송한 데 대해 손해배상과 기사 수정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들은 지역 '맛집'에 대해 보도하면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평소에 체구가 커 사진을 촬영하지 않는데 동의 없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도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6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신청인의 초상이 노출된 부분에 대한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은 첨부하지 않아 수록하지 않음

■ 조정결과

중재부는 양 당사자가 양보하여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권유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유감표명, 기사수정과 함께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총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사항

유감표명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해 본 합의로써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사 수정사항

피신청인들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의 초상이 화면전체에 단독으로 노출된 부분은 열람·검색 차단하여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사례 35 2020서울조정442·443 / 정정·손배청구

지자체 체육회장 후보자인 신청인을 여러 차례 비판한 보도에 대해 반론을 충분히 실지 않았고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을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도체육회장 후보였던 B씨가 업무추진비 환원 약속, 차량 및 운전기사 제공 등과 관련하여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는 취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6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A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재임 당시 업무추진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지급받은 업무수행경비를 선수나 감독을 위해 사용했으며 기부활동을 하는 등 헌신해왔는데도, 피신청인이 수차례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체육회장선거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하였다며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 보도의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은 업무추진비는 받은 사실이 없고 급여성으로 지급된 업무수행경비는 선수나 감독 격려비 등에 지원했다.
- 신청인은 개인명의, 회사, 본인이 회장을 역임한 협회 등을 통해 거액을 기부했다.
- 해당 보도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A도체육회장선거에 낙선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악영향을 미친 데 대해 사과한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A도체육회 취재내용 등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으며 보도에 악의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하면서 기사에 신청인의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기사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며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금 1,2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보도 1]

A도 체육회 민선 1기 A도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A도 체육회장 후보자 B씨가 거짓 기자회견 논란에 휩싸였다. [중략]

이어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서 “2011년 도 체육회 상임부회장 재임시절 업무추진비를 선수육성기금으로 전액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실천에 옮겼느냐”는 질문이 이어 졌다.

이에 B후보자는 “차량은 물론 기사를 제공 받지도 않았고 법인 카드를 쓴적도 없다”며 “매월 지급되는 350만원은 예산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정도는 총무과장이 관리했고 나머지는 선수나 이렇게... 지원했다”며 “그 돈을 저희 회사에서 전국체전때 전부 3천만 원 2천만 원 해가지고 전부 체전 격려비로 환원했다”고 답했다.

또 “저는 상임부회장 재임 당시 체육회로 부터 어떠한 혜택이나 돈을 받아본 적 이 없다”며 “판공비도 선수를 위해 썼지만 그 돈 역시 저희회사에서 전국체전 격려비로 환원이라기 보다는... 대신 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 결과 2011년 7월 1일 부터 매월 350만원이 정기적으로 B후보의 개인 계좌로 입금됐고 2014년 7월 30일 까지 37개월간 총 1억2천950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전액 환원했다는 업무추진비는 간혹 체전 참가시에 따라 A전문건설협회 또는 C건설 명의로 총 1억2천950만원중 절반 정도만 입금된 사실이 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더욱 큰 문제는 도 상임부회장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환원이 A전문건설협회 또는 C건설 명의로 환원이 이뤄져 이들 법인의 지출명분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후략]

[보도 2]

[전략] 취재진은 B후보자 개인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회사를 통해 환원했다는 발언에 대한 확인 결과 도체육회 체육육성기금 후원자의 명단에서 ‘전문건설협회(B씨)’이 5회에 걸쳐 3400만원, ‘C건설(B씨)’ 1회 2000만원, ‘B씨’ 1회 2000만원 이 기탁된 사실이 확인됐다. [중략]

B후보자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6일 ‘B씨 A도 체육회장 출마 기자회견’에 대한 본지의 27일 ‘B씨 A도 체육회장 후보 거짓 기자회견 파문’ 보도에 대해 해명성 글을 올렸다.

자신은 A도나 대한체육회에서 낙점 받지 않은 후보라며 도 체육회로 부터 어떤것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업무추진비가 아닌 업무수행경비명목으로 개인통장을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후략]

[보도 3]

[전략] B후보자는 이 자리 에서 “자신은 2011년 7월부터 2014년 7월 30일까지 도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재임 하는 동안 도체육회로 부터 차량을 비롯한 운전기사의 도움을 일체 받은바 없다”고 말했다. [중략]

또 B후보자가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재임기간 동안 차량과 운전기사 이용이 있었다고 밝혀 또 다른 거짓말 기자회견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A도 체육회는 취재진이 요청한 정보공개 요구에서 B후보자가 도 체육회 상임부회장 재임 당시 A도 체육회 운영자금으로 업무용 그랜저 차량을 구입했고 이 차량이 구입된 직후 3일만에 운전기사를 신규채용 하고 B후보자가 이 차량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후략]

[보도 4]

[전략] 이에 취재진이 B후보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에 이어 3일 추가로 A도 체육회에 확인한 결과 B후보자의 지난 2011년 7월 1일 부터 이후 3년 간의 재임기간 동안 구체적인 체육기금 기탁 내역이 확인 됐다. [중략]

특히 B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는 목록에서 기부자 B씨, 입금내역 없음, B씨 영수증 발행, 이라는 내용이 발견돼 기부자(B씨)와 영수증(B씨)은 확인 됐는데 정작 입금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의혹이 제기 됐다.

결국 B후보가 밝힌 1억 2천여만 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액 환원은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본인과 전혀 다른 개체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낸 기부금을 마치 본인이 낸 것처럼 기부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 자랑하듯 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후략]

[보도 5]

[전략] B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재임 당시 지급 받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회사를 통해 전액 환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 지고 있다.

또 이날 자신은 도 체육회로 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임 중에 도 체육회 운영비로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고 운전기사를 신규채용해 이를 이용한 사실이 알려 지면서 후보자격 논란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후략]

[보도 6]

민선1기 A도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업무추진비 기부 진위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개인이 받은 업무추진비를 회사가 대신 낼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절차적 적법성 의혹으로 재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도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B후보는 지난 12월 26일 기자회견에서 도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재임한 2011년 7월 1일 부터 3년간 자신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를 회사를 통해 전액 환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도 체육회의 기부금 자료 제공이 부실했다며 어느 정도 맞는 것으로 보인다는 업무추진비 정보를 공개했다.

B후보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전 자료 기탁금은 4000만원 인데 비해 1400만원이 늘어난 54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금액 중 'C건설/B씨'로 입금된 금액은 2회 3000천만 원, 'C건설' 2회 2100만 원, 'B씨' 1회 300만원이 재임중에 기탁한 기부금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인이 받은 업무추진비를 회사 명의로 대신 낸다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 언론사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6차례에 걸쳐 'A도체육회장 후보였던 B씨가 업무추진비 환원 약속, 차량 및 운전기사 제공 등 관련하여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B 전 후보는 A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재임 당시 받은 직책성 업무수행경비를 선수 격려금, 체육행사 지원비 등으로 사용했고, 개인·회사 명의로 체육계에 돈을 기부해왔으며, A도체육회로부터 상임부회장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은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면 기사목록 상단에 위의 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이후에도 해당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홈페이지에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들의 본문 하단에 위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36 2020서울조정472, 2020서울조정622 (병합) / 각 손해청구

코로나 19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받고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차량 안에서 검사를 받는 신청인 1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 신청취지

부부 사이인 신청인들은 보도 사진에 차량 유리에 부착한 아파트 스티커가 촬영되었는데, 스티커에 신청인들의 핸드폰 번호, 아파트 동 호수 등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총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 조정결과

심리 중 양 당사자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중재부는 손해배상 총 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이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들에게 각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37 2020대전조정8/9 / 각 손해청구

‘다큐 에세이’ 프로그램에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한 데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줬다는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다큐 에세이’ 프로그램에서 에코파티 현장을 보도하면서 공연을 관람하는 신청인의 초상을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긴급하지 않은 사안을 보도하면서 개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심리가 개최되기 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조정을 취하했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내레이션 : 예술가들도 참여해 에코파티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몸과 정신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진짜 건강한 삶이라고 말하는 A원장. 에코파티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먹거리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명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하는군요. [후략]

사례 38 2020서울조정564/623, 2020서울조정565/624 (병합) / 각 정정·손배청구

보도 내용과 무관한 업체의 상호를 방송하여 업체의 상호권 및 명예를 훼손한 보도에 대해 정정 및 사과보도, 손해배상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특정 종교단체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하면서 해당 종교와 명칭이 유사한 신청인 회사의 홈페이지와 제품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회사는 B종교와 무관한데도 마치 B종교단체가 운영하고 교인들이 주소비계층인 회사인 것처럼 홈페이지와 제품들을 노출해 오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 영업 활동이 위축되어 실질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져 상호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정보도와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방송 중 자료화면으로 홈페이지 및 제품이 보도된 A주식회사는 B종교와 무관하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방송을 내보낸 것은 명백한 과실로 다시보기에서 해당 내용을 열람 및 검색 차단하였고 정정사과문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재부는 정정보도를 방송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조정안을 제시,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고 손해배상금을 6백만원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C씨 : B종교단체가 하는 사업의 대부분의 수요는, 다 그 소비계층이 어디냐면 B종교단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회자 : 안으로 쥐어짜는 그런 구조네요. 그러니까.

C씨 :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고 계속 푼돈을 얻어내는 방식.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B종교단체에 대해 방송하며 D도 소재 면류·소스류 제조업체인 A주식회사의 제품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E 등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A주식회사는 B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A주식회사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방송 프로그램 방영시간대에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재방송하되, 신청인과 관련한 부분은 제외하고 방송하며, 방송 도입부에 위의 보도문을 방송한다. 단,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위의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배경화면에 계속해서 노출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다시보기 영상이 검색되는 한, 다시보기 영상 도입부에도 위의 정정보도문 영상을 삽입하며, 해당 다시보기 영상에서 신청인과 관련한 부분은 계속해서 삭제되어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피신청인들은 위 조치 이후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39 2020서울조정666·667 / 정정·손배청구

근거 없이 신청인 업체를 비윤리적인 회사라고 보도한 데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중재부가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업체가 생산한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되어 식약처로부터 제품생산 중단명령을 받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조치를 하지 않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업체는 식약처가 B제품 중 금속성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의 회수·판매중지를 한 것일 뿐, 제품생산 중단을 명한 것이 아니고, 회수 대상 제품을 대부분 회수해 폐기했으며 소비자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청인이 비윤리적 회사라는 취지로 보도하여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7,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식약처는 A업체에 대하여 금속성이물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명한 것이지 제품생산 중단을 명한 것이 아니다.
- A업체는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하여 폐기했고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은 없었다.
- 조치 대상 제품과는 무관한 제품의 사진이 게재되었다.

■ 조정결과

심리 중 중재부가 제시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기사수정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 및 손해배상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않아 중재부에 직권으로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중재부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기사수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 5백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네이버쇼핑에서 1만277명의 네티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강식품회사인 'A'업체가 식약처로부터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명령을 받은 가운데 이미 구매했거나 복용한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조치에는 입을 닫고 있어 소비자들로 부터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A업체가 판매한 건강식품 'B'(유통기한 2022년 1월 2일)에 인체에 해로운 금속성 이물이 기준 초과로 적발돼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명령과 함께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략]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판매를 위한 홍보에만 치중하고 제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비윤리적인 가공식품회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보인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수정 전 원본 기사)에서 A업체가 식약처로부터 'B' 제품생산 중단과 회수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보상조치엔 입을 닫고 있어 소비자들의 비난이 이는 등 제품의 심각한 문제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비윤리적 회사라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B' 제품 중 금속성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유통기한 2022년 1월 2일)의 회수·판매중지를 한 것일 뿐, 제품생산 중단을 명한 것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A업체는 “물류센터와 거래처에 있는 회수 대상 제품을 대부분 회수해 3월 27일 C시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했고, 해당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민원이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텍스트 기사목록에 위 보도문을 통상의 기사 게재 방식대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에 포함된 사진 중 'B'제품을 제외한 다른 제품 이미지를 삭제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40 2020서울조정843·844, 2020서울조정845·846 (병합) / 각 정정·손배청구

면 마스크 교체용 필터가 불량이라고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업체의 쇼핑몰 및 제품 이미지를 사용한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면 마스크 교체용 필터의 성능이 낮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쇼핑몰과 제품 이미지를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업체는 성능에 문제가 없는 마스크 필터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량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쇼핑몰 매출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A업체는 분집포집률 98.6%의 kf94마스크에 들어가는 정상적인 마스크용 필터를 판매하고 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송부한 자료를 근거로 신청인 제품 관련 영상을 모두 수정하고 유감을 표명했으며 손해배상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면 마스크에 부착해 쓰는 교체용 필터, 최근 찾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B언론사 취재 결과, 상당수 제품의 성능이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들도 과장광고 사실을 실토했는데, 식약처는 관리 허점을 인정하고 보완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KF94 마스크 필터 원단이라고 내세운 국내 제품의 차단율은 비교적 높게 나왔는데, 50%대였습니다. [중략]



국내 정식 마스크 업체에서 만들었다는 KF94 마스크 교체용 필터는 85%를 기록했습니다. 면 마스크에 붙여 쓰면 성능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차단율 95%라는 이 필터를 면 마스크에 부착해 측정해본 결과, 55%가 나왔습니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손해배상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3,0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41 2020광주조정46·47/48·49 /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들의 조정신청이 불성립결정된 것이 중재부가 신청인들의 정정보도 요청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의적으로 보도한 데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와 손해배상을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으로 조정불성립’ 판단을 하여 요구를 관철 시키는데 실패했다며, 위원회가 신청인들의 요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피신청인의 태도로 인해 불성립된 것인데 마치 중재부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불성립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인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정정보도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피신청인의 태도에 의해 불성립된 것이지 신청인의 요청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 조정 중 신청인들을 이석시킨 후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조정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보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나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중재부는 심리 당시 조정제도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불성립된 사건을 마치 언론중재위원회가 기각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 정정보도 게재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피신청인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자동으로 소송이 제기됐다.



■ 조정대상보도

황제독감 A시의회 4인방이 본지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본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언론중재부의 판단으로 실패했다. [중략]

본지가 제보자 보호, 수사증거자료 보안 등을 이유로 이들 4인을 중재부에서 배석 제외시킬 것을 요청하고, 중재부는 이를 받아들여 본지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으로 중재불성립’ 판단을 함에 따라 황제독감 4인방은 정정보도, 배상 청구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실패했다.

이들이 본지에 정정보도와 4인이 함께 2천만원, B의원이 1천만원 등 총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중재부는 본지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이들이 요청한 정정보도 요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후략]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황제독감 A시의회 4인방이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는 본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으로 조정불성립’ 판단을 함에 따라 황제독감 4인방은 정정보도, 배상 청구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실패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본지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이들이 요청한 정정보도 요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 B의원이 본지 5월 6일자 1면 “나는 C당 D시의원에 협박당했다” 제목의 보도를 대상으로 조정 신청한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언론조정제도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언론중재위원회(광주중재부)가 E, F, G, B 등 4명의 A 시의원들이 본 신문의 기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사건과 B시의원이 본 신문의 기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린 것은 피신청인인 본 신문이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밝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당사자 중 일방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조정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의 경우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언론중재위원회는 본 신문이 제시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받아들여 해당 조정대상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들의 조정신청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위 보도에서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실패했다’거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요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정정보도 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문 1면 우측 상단에 위의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단,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SNS 전광판'섹션 위에서 2번째 기사로 위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단, 해당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한다. 또한,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위 호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을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들에게 일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42 2020서울조정1899 / 손해청구

코로나 19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신청인들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게재한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통신사인 피신청인은 코로나 19 검사를 받기 위해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들른 어머니와 유치원생 자녀 2명의 뒷모습을 촬영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들른 신청인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였고, 사진 및 사진에 달린 캡션을 통해 신청인들의 거주지,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점, 여러 매체에 해당 사진을 제공한 점, 유치원복을 통해 당사자가 특정된 사정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40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43 2020서울조정1923 / 손해청구

추심업체의 불법추심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그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노출한 보도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손해배상과 기사수정을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사의 통신상품 연체료를 받는 추심업체 B사의 불법추심 의혹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상담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신청인 소속 회사가 보도내용과 무관하고, 보도에 필수적이지 않은 신청인의 사진을 블라인드 처리 없이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정대상기사에 삽입된 사진 중 신청인의 초상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속한 C사는 A사가 출자해 운영하는 고객센터로 보도내용과 무관하지 않고, 신청인의 사진이 보도에 필수적이었으며, 해당 사진은 홍보용 보도자료 사진으로 이미 공개된 것이므로 보도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리 결과, 보도에 필수적이지 않은 신청인 초상 및 성명이 블라인드 처리 없이 게재된 점, 피신청인의 피해구제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손해배상 2백만 원 지급과 기사수정보도 게재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신청인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자동으로 소송이 제기됐다.

■ 조정대상보도

A사 통신상품 연체료를 대신 받아 내는 <B사>가 고객의 이동전화 이용정지일을 마음대로 앞당겼음을 스스로 인정한 문건이 나왔다. 이 추심업체가 A사의 연체료를 불법추심한 의혹이 있다는 7월 7일자 본지 보도(A사 이동전화 연체료 불법 추심 의혹)를 추가로 뒷받침하는 자료다. 문건에는 추심을 맡긴 A사가 ‘이용정지일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는 정황까지 담겨있다. [후략]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기사 수정사항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 초상 및 성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정하고,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이 사항을 전송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44 2020서울조정2283 / 손해청구

사기혐의로 고소된 P2P 업체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금흐름 도표에 기재된 신청인의 실명을
여과 없이 노출한 데 대해 손해배상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된 P2P 업체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금흐름 도표에 기재된
신청인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P2P업체 A의 불법행위를 보도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하여 마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처럼 보도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실명 보도로 인해 신청인이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재부에서는 양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실명을 삭제 처리하는 것과 함께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상장폐지 위기의 B사가 주식회사 A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사는 B사가 투자한 회사다.
또한 A사 채권자 소송인단도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A사는 이자 지급을 줄줄이 연체해 디폴트 직전이라는 게 전문가들 공통된 우려다. A사는
2017년 8월 설립된 대출 중개 목적의 P2P(peer to peer) 플랫폼 업체다. [중략]

그러나 A사가 2019년 상반기부터 현재 상폐 위기인 C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A사가
C사의 횡령·배임 금액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펀딩 자금으로 막았다는 것이다. 경영권과 관련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실명을 삭제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인에게 금 삼십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45 2020서울조정2294·2295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인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유학 학비, 월세 송금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신청인의 소명자료를 근거로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을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장관 후보자인 신청인이 자녀의 유학 체류비 관련 논란에 해명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자녀의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자녀 유학 관련 악의적인 의혹 제기를 불식시키기 위해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와 함께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를 모두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자료내역 확인 없이 허위의 내용을 보도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및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A부처 장관 후보자인 B씨는 자신의 자녀와 관련한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므로 정정보도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반론보도를 게재할 의사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차 심리에서 중재부는 신청인에게 송금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 자료제출을 위해 기일을 속행했고, 2차 심리에서 자료가 추가 제출되었다.

피신청인은 추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부 자료는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정정보도 게재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여 신청인이 국회에 학비 및 월세 관련 송금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직권으로 결정했으나 피신청인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자동으로 소송이 제기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B후보자는 자기와 아내 이름으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는 국회에 냈다.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B후보자는 이날 아들 유학 월세 580만원과 관련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학교 친구 집에 방 1개를 ‘룸셰어(공유)’ 방식으로 빌려 거주했다”고 다시 해명했다. [후략]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A부처 장관 후보자 B가 본인과 아내 이름으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는 국회에 냈고,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현 A부처 장관 B는 당시 아들과 관련한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문 A6면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활자 크기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46 2020부산조정51 / 손해청구청구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하는 일반 참석자의 초상과 음성을 공개한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혁신도시 개발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이 공청회에서 ‘대기업의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투자자로서 경제적으로 파탄 지경’이라고 발언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본인의 초상과 음성이 담긴 영상이 모자이크나 변조 처리 없이 보도되어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신원이 공개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개인의 재정상황이 공개되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1,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청회에 혁신도시 위원으로 참석했고 공공장소에서 공식적인 발언기회를 얻어 질문하였으며 이는 통상적인 뉴스 취재방식을 따른 것이므로 손해배상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청인이 연락하여 즉시 인터넷과 유튜브 다시보기 영상에서 신청인 촬영 부분을 삭제 조치했다고 알렸다.

중재부는 이 사건 보도의 내용, 보도 이후의 조치 등 제반 사정 및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 등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시간과 비용소모 등을 고려할 때 조정을 통해 원만히 화해할 것을 권고, 조정액으로 1백만원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이처럼 B대기업에 대한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B기업 측은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만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A혁신도시 상인

B기업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지금 한 달에 500만원씩 나가고 있어 집안에 파탄 나게 생겼습니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백만(1,000,000)원을 지급한다.